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자원봉사 Dovol(두볼)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자원봉사 DOVOL(이하 두볼)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 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규정」 및 「e청소년 자원봉사 DOVOL(두볼) 이용 매뉴얼」을 준용함.

2021. 4.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목 차

Ⅰ. 20년도 비대면 가이드라인 운영성과와 평가 ····· 3

Ⅱ. 운영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 4

Ⅲ. 세부 변경내용 ····· 5

Ⅳ.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절차 및 방법 ····· 7

Ⅴ. 비대면 봉사활동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 10

Ⅵ. 향후 계획 ····· 12

□ 붙임문서 ····· 13

(붙임1) (터전, 동아리) 두볼, 비대면 봉사활동 등록·검색 방법 ····· 13

(붙임2) (청소년) 두볼, 비대면 봉사활동 검색·신청 방법 ····· 15

(붙임3) (청소년) 두볼, 봉사활동 사전계획서 출력 방법 ····· 16

(붙임4) 물품 제작 및 나눔활동 관련 법률 준수사항 ····· 17

(붙임5)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락처 ····· 23

□ 관련양식 ····· 24

(양식1)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윤리서약서 ····· 24

(양식2)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보고 ····· 26

(양식3)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 27

(양식4) 개인정보 동의서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 28

(양식5)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보고서 ····· 30

Ⅰ 20년도 비대면 가이드라인 운영성과와 평가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코로나19') 발생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급감*하였으나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하'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 발생

  *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인원 ('19년) 279,743명 ⇒ ('20년) 132,111명

  * 비대면 봉사활동이란 봉사자와 수혜자가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활동

- 비대면 봉사활동의 허용범위,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에 따라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ㅇ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추진경과

- '20. 6.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의견 수렴
- '20. 7. 2020년도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배포
- '20. 7~8.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적용(서울 및 대구광역시시교육청)
- '21. 3~4.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수렴(3회)
  · 시·도교육청, 시·도활동진흥센터, 관계기관, 현장 지도자, 교사 등

ㅇ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관리 기준 미흡, 제도 정비 필요
- **(기준신설)** 활동 영역, 방식, 인정 기준 등 새로운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이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에 용이하도록 개선 필요
- **(모니터링)**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미 준수 시 제재 방안이 없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
- **(활 성 화)** 비대면 봉사활동의 개념 및 사례 안내를 통한 비대면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필요

II 운영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ㅇ 운영개요

- **(적용기간)** 본 지침 배포 시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시까지
- **(적 용 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자원봉사 Dovol(두볼) 시스템
- **(적용대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두볼 인증 터전, 터전 동아리
  두볼을 이용하여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활동영역)** ①지역사회봉사활동 ②자연환경보호활동 ③캠페인활동 ④해외봉사활동
- **(활동방법)** ①비대면 ②혼합형(비대면+대면)
- **(활동확인)** ①실시간 확인 ②사후 확인
- **(시간인정)** 봉사자가 참여한 봉사 시간에 한하여, 터전 및 동아리 담당자가 두볼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확인서 발급
- **(활용방안)**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운영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 지원, 관리
  · (터전, 동아리) 기관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청·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 참고 및 학생 대상 안내

ㅇ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활동영역	교육봉사, 문화봉사로 한정 (멘토링, 행사 및 문화공연 지원)	봉사활동 전 영역으로 확대 (지역사회/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해외봉사)
활동확인 및 증빙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화면 캡처 및 영상저장)	①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화면캡처 또는 영상녹화) ② 담당자가 사후 확인 (봉사자별 작성한 활동보고서) ①, ② 번 중 택 1
수혜자 여부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시간 불인정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봉사활동의 봉사시간 인정 (단, 제작을 통한 기부활동인 경우 특정한 수혜자 지정 필요)
모니터링	미실시	시도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Ⅲ 세부 변경내용

○ (활동영역)

기 존	개 선
▪ 교육봉사, 문화봉사로 한정 (멘토링, 행사 및 문화공연 지원)	▪ 두볼 전 영역으로 확대 (지역사회/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해외봉사)

- 비대면 봉사활동 활동영역을 교육봉사와 문화봉사로 한정했던 부분을 봉사활동 전 영역으로 확대
- 영역별 봉사활동 내용 및 예시

① (지역사회봉사활동) 이웃돕기활동

* 예: 마스크제작·기부활동, 통번역활동, 점자책자 제작, 교육 및 상담, 도시락배달 등

② (자연환경보호활동) 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 예: 개인별 쓰레기줍기(플로깅), 공공시설물 꽃·나무 심기 등

③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등 편견 극복 및 예방 캠페인 활동

* 예: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 권익옹호 카드뉴스 제작·배포를 통한 캠페인활동

④ (해외봉사활동) 해외에 파견되어 진행하는 봉사활동

* 예: 베트남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캄보디아 보건의식 온라인 캠페인 활동

※ 국내에 있는 봉사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봉사 활동은 국내 봉사활동으로 간주함.(지역사회,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영역 중 선택 후 시간인정)
※ 해외봉사활동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봉사시간으로 불인정함.
(근거: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 (활동확인 및 증빙)

기 존	개 선
▪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화면 캡처 및 영상 녹화)	▪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화면캡처 또는 영상녹화) ▪ 담당자가 사후 확인 (봉사자별 작성한 활동보고서) * 2개 중 택 1

- 청소년별 활동 보고서를 통한 사후 확인 방식의 봉사시간 인정*

* 추진근거: 시·도교육청 2021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활동 확인 및 증빙자료

①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담당자가 비대면 봉사활동 진행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증빙자료: 담당자가 봉사활동 화면 캡쳐 사진 또는 영상 녹화자료 활동사진 및 영상자료가 첨부된 기관 자체 활동 보고서

* 예: 어울림마당 온라인 문화공연 봉사활동, 온라인 멘토링 활동

② (담당자가 사후 확인) 담당자가 사전 안내한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별 비대면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 증빙자료: 봉사자별 작성한 활동 보고서(활동사진 첨부 必)

* 예: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영상 제작 및 기부활동, 인권 개선 캠페인 활동

○ (수혜자여부)

기 존	개 선
▪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시간 불인정	▪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봉사활동의 봉사시간 인정 (단, 제작을 통한 기부활동인 경우 특정한 수혜자 지정 필요)

- 수혜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자연환경보호, 캠페인활동의 경우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수혜자 여부에 대한 규제 해제
- 수혜자 여부에 따른 봉사활동 예시

① (수혜자가 특정되는 봉사활동)

* 예: 온라인 멘토링활동, 온라인 상담활동, 통번역·점자 책자제작 및 기부활동

②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 봉사활동)

* 예: 개인별 쓰레기줍기(플로깅), 장애인 인권개선 온라인 캠페인(카드뉴스 등) 활동

※ 번역, 점자, 물품 등 제작 후 기부하는 활동의 경우 사회복지 및 복지 사각지대의 수혜자(기관)가 지정되어야 함.

○ (모니터링)

기 존	개 선
▪ 미실시	▪ 지역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봉사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가이드라인 미 준수 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 규정' 의거하여 처리

* 봉사활동, 및 봉사확인서 인정 취소, 터전(동아리) 경고, 중단, 취소, 지도자 위촉 취소 등

Ⅳ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절차 및 방법

① 비대면 봉사활동 계획 수립 → ② 봉사활동 안내 → ③ 봉사활동 실시 → ④ 봉사활동 확인 및 증빙 → ⑤ 봉사활동 시간 인정, 확인서 발급

① **(계획수립)** 자원봉사활동 및 학생봉사활동 기본원칙,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계획(사전교육-활동-평가 절차, 안전계획 포함) 수립

1)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2) 학생봉사활동 기본 원칙 (시·도교육청 2021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비대면 봉사활동은 (사전교육)-(봉사활동)-(평가)로 프로그램화 되어야 함.
봉사활동 참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시 학교는 봉사시간 불인정(예: 참가비, 기부금 등)
봉사활동 전 과정에 걸쳐 학생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가능
봉사활동 실천과정(시작전, 실천, 결과) 사진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가능

- (안전계획)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 계획을 필히 수립 · 운영하도록 함.

항`목	수행내용	비고
안전교육	비대면 봉사활동 시 참여 청소년(봉사자 및 수혜자 등)의 태도 및 언행 등의 주의사항, 성희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함.	자체 양식 활용
윤리준수	비대면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봉사자 및 수혜자 등)의 자발적인 윤리준수를 위하여 윤리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	양식1 (p24)
활동중단	비대면 봉사활동 중 언어적 폭력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봉사활동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즉시 연락하도록 함.	양식2 (p26)
모니터링	비대면 봉사활동 담당자는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증빙자료)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대면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양식3 (p27)
정보보안	정보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 초상권 보호, 저작권 침해예방 등 정보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자체 양식 활용

② **(활동안내)** 봉사활동 내용, 참여 방법, 봉사활동 시간 등 안내

봉사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터전 및 동아리 담당자는
1) (두볼에 봉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봉사자에게 비대면 봉사활동 안내문(계획서) 제공
2) (두볼에 봉사 신청을 완료한 경우) 두볼의 봉사활동 사전계획서* 출력 방법 안내
※ 활동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승인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히 안내하여야 함.
<일부발췌: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 봉사활동 사전계획서 출력 방법(붙임3 참조)

③ **(활동실시)** 활동방식 및 절차에 맞는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 (활동방식) 비대면 혹은 혼합형(대면+비대면)으로 운영
  ㉠ (비대면) 활동 전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활동
  ㉡ (혼합형) 대면과 비대면 활동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활동
    * 예시: (비대면) 사전교육 및 회의, 평가 + (대면) 봉사활동
- (활동절차) '사전교육-봉사활동-평가'의 절차로 운영
  * 예시

사전교육	→	봉사활동	→	평가
영상 청취, 실시간 화상교육		봉사활동 운영		평가회의, 소감문작성

④ **(확인 및 증빙)** 봉사자 본인 확인, 활동 확인 및 증빙자료 정리

- (봉사자의 본인 확인) 활동 전 봉사자의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 (활동확인 및 증빙) 확인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취합
  ㉠ (실시간 확인방식) 담당자가 봉사자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경우(온라인 멘토링, 실시간 비대면 상담 등) 활동
    - 활동 과정이 담긴 **캡쳐 사진** 또는 **활동 녹화 영상** 자료나
    - 해당 자료가 포함된 **봉사활동 자체 보고서**로 활동 증빙 가능
  ㉡ (사후 확인방식) 담당자가 봉사활동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점자책자 제작, 번역 활동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봉사자별 활동보고서**(양식5)를 취합·확인하여 활동 증빙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운영기관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우 또는 운영기관 담당자가 봉사활동의 실천과정 사진(시작 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일부발췌: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시·도교육청)>

⑤ **(시간 인정, 확인서 발급)** 시간 인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진행

- (시간 인정) 비대면 봉사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및 회의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실제 활동한 시간에 한해 인정**하도록 함. 단, 봉사활동 없이 교육 및 회의만 한 경우는 봉사시간 불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당해 연도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준용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

<초·중·고등학생봉사활동 최대 시간 인정 기준>

구분	평일 (온,오프라인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시간	·6교시 수업기준일 경우 2시간 인정 ·4교시 4시간 인정, 7교시 1시간만 인정	8시간

※ 코로나19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수업이 있는 평일로 봉사시간 산정

·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진행 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15세 미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혼합형(대면+비대면) 봉사활동 중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 별도 증빙(화면 캡쳐, 영상 녹화, 활동 보고서 등) 불필요

- (확인서 발급) 두볼을 통해 **실제 활동한 일자 및 시간에 근거**하여 시간 단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1시간 미만의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 시 최소 2회기 이상을 운영하여 시간 단위로 활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두볼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기준 >

• (시간인정) 두볼의 봉사활동 확인서는 시간 단위로만 인정 가능
• (인정방법) 분 단위의 봉사활동 시 2회기 이상 운영하여 시간단위로 확인서 발급

- 회기별 30분 운영 시 총 시간을 합하여 **시간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예) ① 3.25.(수), 30분 + ② 3.26.(목), 30분 = 3.26.(목)날짜로 1시간 확인서 발급
  * 활동 주간의 마지막 일자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진행

Ⅴ 비대면 봉사활동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ㅇ 비대면 봉사활동 불인정 기준

-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정책 제안 활동 등, 봉사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

* 예: 운영위원회, 정책자문단, 특별회의 등 정례적인 회의 참석

· 편지쓰기(위문편지 등), 온라인 행사 관람, 태극기 게양

· 봉사활동 없이 교육, 회의, 일상적인 연습 등의 활동

· 어떤 형태로든 봉사자가 금품(활동비 등)을 사례로 받는 활동 등

- 봉사활동 참여 시간의 특정이 불가한 경우

· 물품 및 현금 기부, 글(영상) URL 공유, 유해 게시물 신고, 댓글 달기* 등

* 선플달기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선플달기 이외의 댓글달기 활동
(근거: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 예: 폐건전지, 폐휴지 수거 후 제출 시 봉사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

· 챌린지 등, 개인적인 실천 활동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불가

* 예: 일회용품 안 쓰기, 자기 집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저탄소를 위한 육류 안 먹기 등

- 본인 확인 및 증빙자료(사진, 영상, 활동보고서 등)가 없는 경우

· 봉사자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담당자가 봉사활동 증빙(사진, 영상, 결과보고서 등) 자료 미 보유

- 특정한 사회복지 및 복지 사각지대의 수혜자가 없이 진행되는 자료(물품) 제작·기부활동인 경우

· 제작을 통한 기부활동의 경우 완성 자료(물품)가 제공되는 사회복지 및 복지 사각지대 수혜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예: 특정 수혜자 없이 진행되는 번역, 점자 책자 제작 활동(X) ▸수혜자 없음
지인에게 마스크 제작·기부활동(X): ▸사회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수혜자가 아님
페트병을 활용한 나만의 페트병 화분 만들기(X) ▸복지사각지대 수혜자 아님

- 두볼에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인 경우

· 헌혈 활동*(전혈, 성분헌혈)

* 두볼은 현혈과 관련된 봉사활동(캠페인 등)은 인정하나, 헌혈에 대한 시간 불인정
(중·고등학생의 경우 헌혈증을 근거로 학교에서 직접 임력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에서 인정 가능)

- **참가에 따른 현금 및 현물을 요구하는 경우**

  · 봉사자 및 보호자로 하여금 봉사활동 참가비, 후원금, 기부금, 재료비 등, 참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예: 환경 정화 동아리 가입을 위한 후원금을 요구하는 경우
    봉사자가 비대면 봉사활동을 위한 물품 제작 키트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ㅇ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

  · (개인정보 동의) 터전 및 동아리가 봉사자(수혜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할 경우 개인별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전에 취합하여야 함. 단, 두볼로 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봉사자별 개인정보 동의서는 취합하지 않아도 됨.(두볼 회원가입 시 개인별 개인정보 동의 완료)

  · (초상권 동의) 봉사자 및 수혜자 등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취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상권 사용 및 활용 동의서를 사전에 취합하여야 함.

- **취합자료 보관 및 기한**

  · (취합자료 보관) 봉사자별 취합한 개인정보 및 활동 보고서, 증빙자료(영상 등)는 봉사활동 운영기관에서 보관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자료보관 기한) 취합자료의 보관은 봉사활동 운영기관의 자체 내부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함.

- **물품 제작 후 나눔 활동 시 관련법 준수**

  · 제작 물품별 관련 법률

  ㉠ (초,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안전제품안전법 제8조 및 제10조

  ㉡ (세정제, 비누, 향수, 화장품 등) 화장품법 제3조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화학안전제품안전법 및 화장품법의 확인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을 만들어 타인에게 나눠주는 활동은 법률 저촉 사항임.(붙임4 참고)

Ⅵ 향후 계획

○ **(~4.30.)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보험가입 서비스 적용 협의**

- 현재 제공 중인 청소년 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를 대면활동에서 비대면 활동까지 보험 보장범위 확대
- 비대면 봉사활동의 보험 보장 항목은 추후 공지 예정

○ **(연중) 비대면 봉사활동 컨설팅**

- 운영일정: 상시
- 운영기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붙임5)
- 운영내용
  -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 두볼을 활용한 비대면 봉사활동 시간 인증 방식 상담 등
  - 비대면 봉사활동 운영 사례 안내

○ **(연중) 비대면 봉사활동 모니터링**

- 운영일정: 정기(매월) 및 상시
- 운영기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운영근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 규정
- 운영내용: 두볼에 등록·완료된 비대면 봉사활동 점검
- 조치방안: 자원봉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봉사활동 취소, 터전 및 동아리 경고·중단·취소 등

붙임1 (터전, 동아리) 두볼, 비대면 봉사활동 등록검색 방법

ㅇ 비대면 봉사활동 등록

- (사이트 경로) 두볼-로그인-업무지원서비스-봉사활동 운영-봉사활동 등록

① 봉사활동 방식: 해당 봉사활동 참여 방식 선택(대면, 비대면, 혼합형)

② 봉사활동 안내자료: 활동 안내서(계획서), 활동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동아리의 경우 터전명 대신 동아리명 선택 가능

ㅇ 비대면 봉사활동 검색

- 활동 예정인 봉사활동 중 비대면(혹은 혼합형) 봉사활동 검색

· (사이트 경로) 두볼-로그인-업무지원서비스-봉사활동 운영-봉사활동 등록

① 봉사활동 운영 주체: 터전(운영기관) 혹은 터전동아리(운영기관 소속 동아리) 중 선택

② 방식: 운영주체별 활동 예정인 봉사활동 중 활동 방식에 따른 봉사활동 목록 확인

- 운영이 완료된 봉사활동 중 비대면(혼합형) 봉사활동 검색

· (사이트 경로) 로그인-업무지원서비스-봉사활동 운영-봉사활동 현황조회

① 봉사활동 운영 주체: 터전(운영기관) 혹은 터전동아리(운영기관 소속 동아리) 중 선택

② 방식: 운영주체별 활동 완료된 봉사활동 중 활동 방식에 따른 봉사활동 목록 확인

붙임2 **[청소년] 두볼, 비대면 봉사활동 검색·신청 방법**

ㅇ 비대면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사이트 검색 경로) 두볼-e청소년-봉사활동 찾기
- (사이트 신청 경로) 두볼-로그인-e청소년-봉사활동 찾기-신청

① 활동영역: 활동 영역별 봉사활동 검색(중복체크 가능)
② 활동방식: 활동 방식별 봉사활동 검색(중복체크 가능)
③ 터전/동아리: 운영 주체별 봉사활동 검색
  - 운영터전: 누구나 신청 가능한 봉사활동
  - 터전동아리: 해당 동아리 회원만 신청 가능한 봉사활동
④ 신청: 모집 교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가능
  - 활동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명 클릭 필요

붙임3 [청소년] 두볼, 봉사활동 사전계획서 출력 방법

ㅇ 봉사활동 사전계획서 출력

- (사이트 경로) 두볼-로그인-마이페이지-봉사활동관리-봉사활동 신청내역 -사전계획서 출력

<기재내용>

1. 성명
2. 주민번호
   - 뒷자리 첫 번째 숫자까지 기재
3. 주소
4. 활동기간 및 시간
5. 활동영역
6. 활동방식
   - 대면, 비대면, 혼합형
7. 활동장소
8. 활동내용
9. 세부 활동내용
10. 확인자 및 연락처
    - 기관 지도자, 연락처

붙임4 물품 제작 및 나눔활동 관련 법률 준수사항

ㅇ 초, 방향제, 탈취제 등 만들기 및 나눔 활동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제8조, 제10조 관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3항)

분 류	품 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음(제35조 관련)

* 용어 정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정의)」중 용어의 일부임**

.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함.

.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함.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함.

* 관련법률 제정 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안내사항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화학제품안전법의 확인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은 법 저촉사항이므로 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운영 가능함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 내용 검색)

・만약 봉사 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신고번호)'*를 부여받은 활동 키트를 구입・제작하여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은 가능**함.

○ (참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예

※ 활동키트에 대한 '신고증명서' 및 '신고번호'의 사전 확인 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illegible]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신고 제품	제조 수입 [√] 제조 [ ] 수입	품목 방향제
	제품명	용도 자동차용(실내용) 외 1 종
	제형 함침물형	중량·용량·매수 17 g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신고사항 기재사항 참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1 년 01 월 15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210mm×297mm[백상지(150g/㎡)]

ㅇ 화장비누, 향수 등 화장품 만들기 및 나눔 활동

- 관련법령: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내용

· 화장비누 등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제3조 관련)

* 화장품 유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3)

분 류	품 목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3)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4) 외음부 세정제 5)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2) 아이 라이너(eye liner) 3) 아이 섀도(eye shadow) 4) 마스카라(mascara)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6)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분말향 3) 향낭(香囊) 4) 콜롱(cologne)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hair tints)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3) 염모제 4) 탈염·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분 류	품 목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2) 헤어 토닉(hair tonics) 3)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4) 헤어 크림·로션 5) 헤어 오일 6) 포마드(pomade) 7)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8) 샴푸, 린스 9)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10)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11) 흑채 12)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3) 탑코트(topcoats) 4)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2) 남성용 탤컴(talcum) 3)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4)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5) 셰이빙 폼(shaving foam)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제모왁스 3)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누구든지 화장비누를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한 화장비누를 유통·판매(무상 증여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 9~10p 관련)

· '방과후 학교' 등에서 청소년이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거나 가정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되어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대상이 됨.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 19p 관련)

- 안내사항

  ·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화장품법의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화장품을 만들어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은 법 저촉사항이므로 주의

  · 화장품 등을 제조·배포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부작용, 신체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지양** 권고

  · 자세한 안내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지내용 확인 요망
  (특히 '화장품전환물품관련 질의응답집'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개 > 지방식약처소개 > 서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 > 검색창에 '화장품'으로 검색 >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 게시물 확인

붙임5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락처

관할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1-852-3461~2
대구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053-659-6225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2-234-0755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2-488-073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2-227-0606~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4-864-7935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5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3-731-4704
강원 (강릉)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033-641-3990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043-220-6821~2
충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041-562-9003
전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3-232-0479
전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061-280-9064
경북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4-850-1090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055-711-136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4-751-5041~3

양식1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윤리서약서**

※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청소년 자원봉사 온라인 활동 윤리서약서

소속 :

성명 :

본인은 청소년 자원봉사 온라인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기본정신**

○ 온라인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 온라인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 온라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 온라인 공간은 우리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 **행동강령**

○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
* 타인의 사진, 영상을 어딘가에 배포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진에 성적 이미지 합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불법영상·링크 등)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사석 또는 타인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

○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우리는 위 사항 실천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한다.

* 위의 내용 미 이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봉사활동 인정시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봉사자 (서명)

<비대면 봉사활용 윤리서약서 활용 예>

청소년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윤리서약서

본인은 비대면으로 시각 장애인 청소년 영어 음성 및 점자 책자 제작 지원 봉사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정확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한다.
2. 자원봉사활동을 타인에게 요청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그릇된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최선을 다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4. 정확한 음성 및 입력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5.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음성 책자를 제작한다.
6. 제작한 음성 및 입력 자료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항 실천을 통해
올바른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본 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감수할 것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봉사자 (서명)

양식2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보고**

※ 본 양식은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보고

('20. *○○. ○○.,* 기관명)

□ 활동개요

소속지역	*서울*		
터 전 명	*수련관*	담당자	
활 동 명	*비대면 청소년 멘터링*		
활동일자 / 시간	*2021.5.9.(토), 13:00 ~ 14:00*	활동장소	*자택*
활동내용			

□ 기본정보

○ 인적사항(사고를 입힌 사람)

성 명		생년월일	
e청소년 ID		보호자성명(관계)	
연락처	(본인)	(보호자)	

○ 인적사항(사고를 입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e청소년 ID		보호자성명(관계)	
연락처	(본인)	(보호자)	

□ 사고개요 및 조치사항

○ 사고일시 : *2021.5.9.(토) 14:50분경*

○ 사고장소 : *자택(서울 ○○○ 소재)에서 SNS(○○○○)접속*

○ 사고경위 :

○ 세부내용 :

○ 조치사항 :

□ 향후 처리계획

○

양식3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 본 양식은 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봉사활동 일시	년 월 일( ) 00:00~00:00	봉사시간	시간
봉사자명			
활동 내용			

구분	확인내용	그렇다	아니다
참여자 자세	ㅇ활동이 약속된 시간에 시작, 종료하였는가?	√	√
	ㅇ주변 환경 및 복장 등에 문제는 없는가?	√	√
	ㅇ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가?	√	√
활동	ㅇ활동이 충실하였고, 준비가 잘 되었는가?	√	√
	ㅇ소통이 원활하고, 교류가 잘 이뤄지는가?	√	√
	ㅇ활동이 적절히 진행되었는가?	√	√
안전	ㅇ성, 욕설 등 문제가 되는 언어 사용이 없었는가?	√	√
	ㅇ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는가?	√	√
종합 의견			

활동 전 사진	활동 중 사진	활동 완료 사진

위와 같이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모니터링 담당자 : _____

양식4 **개인정보 동의서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 본 양식은 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 제공 동의서도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등
☐ 보유기간: 활동 종료 후 ( )년
☐ 보유목적:
☐ 본인은 (기관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참여 청소년 (서명) 보호자 (서명)

※ (기관명)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즉시 폐기 처리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자:
2. 제공 목적:
3. 제공하려는 항목: 성명, 성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활동 종료 후 ( )년

년 월 일

참여 청소년 (서명) 보호자 (서명)

※ (기관명)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즉시 폐기처리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필요

ㅇ 초상권 사용 및 활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및 활용 동의서

(기관명)은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사진 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이 참가자의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 **수집 목적:**
- **수집 항목:**
- **활용 범위:**

참가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사용 및 배포권은 (기관명)에 귀속되며, 본 기관이 위의 수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명	생년월일	동의 여부		보호자 서명*
	00.00.00.		00.00.00.	동의□	미동의□	

*** 만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보호자의 서명 날인 필요**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양식5 **(청소년봉사자) 비대면 봉사활동 보고서**

* 본 양식은 운영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단, 활동사진 첨부 必)

봉사자명		두볼 아이디	
봉사활동 일정	년 월 일( ) 00:00 ~ 00:00	봉사시간	시간
봉사활동 장소			
봉사활동 내용			
봉사활동 소감			
결과물	봉사활동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이 있는 경우 작성		

활동 전 사진	활동 중 사진	활동 완료 사진
(활동내용과 본인 얼굴이 확인 가능한 사진)	*(활동내용과 본인 얼굴이 확인 가능한 사진)*	*(활동내용과 본인 얼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위와 같이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사자명 : _____

※ 비대면 봉사활동 결과물이 있는 경우 별첨